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6587 취득세등경정청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원 고	1. A(개명전 성명 :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피 고	1. ○○시 ○○구청장
	2.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시 ○○구청장이, (1) 2023. 6. 27. 원고 A에 대하여 한 취득세 9,738,430원, 지방교육세 1,947,68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752,9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23. 6. 27. 원고 D, E에 대하여 한 취득세 7,065,720원, 지방교육세 1,413,14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271,820원을 초과하는 부분, (3) 2023. 8. 31. 원고 F, G에 대하여 한 취득세 7,256,670원, 지방교육세 1,451,3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306,200원을 초과하는 부분, (4) 2023. 6. 30. 원고 H, I, J에 대하여 한 취득세 7,565,600원, 지방교육세 1,513,1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36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2. 피고 ○○시 ○○구청장이 2023. 8. 18. 원고 C에 대하여 한 취득세 4,167,020원, 지방교육세 833,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750,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1 표 '분할 전 토지 및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이 ○○시 소재 각 공동주택 단지의 유치원 부지(이하 '분필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자들로서, 위 각 유치원의 부지가 단일 필지로 분필되지 않아, 각 해당 공동주택 부지 전체 중 일부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나. 분필 전 토지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확정으로 분할되었는데, 그에 따라 별지1 표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 변경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분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분할에 따라 ○○시장에게 (1) 원고 A은 2020. 6. 9. 취득세 9,738,430원, 지방교육세 1,947,680원을, (2) 원고 C은 2020. 3. 23. 취득세 4,167,020원, 지방교육세 833,400원을 (3) 원고 D, E은 2020. 8. 31. 취득세 7,065,720원, 지방교육세 1,413,140원을, (4) 원고 F, G는 2021. 2. 19. 취득세 7,256,670원, 지방교육세 1,451,330원을, (5) 원고 H, I, J는 2019. 11. 27. 취득세 7,565,600원, 지방교육세 1,513,120원을 각 신고하고, 그 무렵 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시장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	경정청구일	거분처분일	경정청구 내용
1	A	2023. 4. 13.	2023. 6. 27.	납부세액 전액감액
2	C	2023. 7. 11.	2023. 8. 18.	취득세 3,541,970원, 지방교육세 708,390원 감액
3	D	2023. 4. 10.	2023. 6. 27.	납부세액 전액감액
4	E			
5	F	2023. 8. 16.	2023. 8. 31.	취득세 6,168,170원, 지방교육세 1,233,630원 감액
6	G			
7	H	2023. 5. 2.	2023. 6. 30.	납부세액 전액감액
8	I			
9	J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마. 원고들이 2023. 9. 20.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조세심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바. 2024. 1. 1. ○○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 ○○구가 신설됨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부처분 중 원고 C에 대한 거부처분의 처분청은 피고 ○○시 ○○구청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거부처분의 처분청은 피고 ○○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소송요건 충족 여부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23. 9. 20.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조세심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4항 참조),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할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 특례(이하 '이 사건 세율특례'라 한다)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100분의 85를 감경(이하 '이 사건 감면특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분할은 이 사건 감면특례의 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율특례와 이 사건 감면특례 중 원고들에게 유리한 이 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건 세율특례가 적용되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80조에 따라 이 사건 감면특례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각 분할이 이 사건 감면특례의 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칙적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는바, 이는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해당하여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없다(유아교육법 제8조 제1, 2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참조).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내부적으로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나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을 가지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형식으로 교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교지에 관한 위 설립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유치원 설립인가가 가능하고, 원고들 또는 변경 전 설립자[1](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분필 전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유치원설립을 위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형식으로 분필 전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감면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이 유치원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유치원 등의 공익성을

1) K유치원의 경우, 2017. 11. 13. 설립자가 L에서 원고 H, J, I으로 변경되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고려하여 그 설립·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본 유치원의 설립조건을 고려할 때, 위 규정상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으로 유치원 등이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규모 등이 확대되거나 그러한 취득이 유치원의 경영에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유치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최초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5. 1. 5. 일부개정 법률 제7332호) 제272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위와 같은 유치원 등의 설립조건을 전제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사업인가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다(2004. 12. 30. 제안된 의안 제171235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참조)].

다) 이 사건 각 분할의 경우, 이를 통하여 원고들이 유치원을 새롭게 인가받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경영하던 기존 유치원의 규모 또는 범위가 확대되거나 기존 유치원 경영에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들 등은 아래와 같이 분필 전 토지를 위치로 각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이래 이 사건 각 분할 없이도 각 유치원을 경영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원고	유치원명	최초설립인가일
1	A	M유치원	1995. 7. 7.
2	C	N유치원	1995. 7. 27.
3	D	O유치원	1994. 8. 24.
4	E		
5	F	P유치원	1995. 3. 4.
6	G		
7	H	K유치원	1994. 5. 28.
8	I		
9	J		

라)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감면특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분할은 이 사건 감면특례가 정한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각 분할이 이 사건 감면특례의 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지방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세율특례의 적용이 이 사건 감면특례의 적용보다 원고들에게 유리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면허세를 각각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면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제131조 제1항, 제5호). 그런데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이 통·폐합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와 관련하여서는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분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세율의 경우에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한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로 조정하였는데, 종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하는 세율의 특례를 두어 종전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 특례를 통해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구 지방세법상의 해당 등록세율과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감면특례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세율의 특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본문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중복감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가 예정하고 있는 '중복감면'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세율의 경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방세 감면 등 특례의 근거법률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본문은 '중복 감면의 배제'라는 제목 하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77조 내지 제178조와 달리, 그 적용대상 법률을 "이 법"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중복 감면의 근거 조문이 '같은 법률' 내에 있어야 한다고 축소해석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에 관한 감면을 정하는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중 어느 법률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법에서 예외적으로 중복 감면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2개의 지방세 감면규정 사이에는 중복 감면의 배제 원칙이 적용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여러 모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장○○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별지1

	원고	분할 전 토지(○○시) 및 공유지분		분할 후 토지(○○시)	소유권변경 등기일
1	A	Q 대 62722㎡	62,722분의 1,056	R 대 1056㎡	2020. 6. 5.
2	C	S 대 33312.4㎡	33,312.4분의 570.2	T 대 570.2㎡	2020. 3. 16.
3	D	U 대 36427.5㎡	36,427.5분의 727.6	V 대 727.6㎡	2021. 4 .16.
4	E				
5	F	W 대 36902.2㎡	36,902.2분의 834.1	X 대 834.1㎡	2021. 3 .2.
6	G				
7	H	Y 대 52697.6㎡	52,697.6분의 878.7	Z 대 878.7㎡	2020. 2. 12.
8	I				
9	J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별지2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9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 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